윤리 서약서

본인은 대한전선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사람중심의 문화, 고객가치, 미래지향'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한 윤리관을 확립하고, 회사의 윤리경영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긍지와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외 제반 법령, 회사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 2. 회사의 경영원칙,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며, 윤리의식 및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정책에 불일치하거나 반대되는 행동이나, 스스로 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 3.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령과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 방지법(Bribery Act)」 등 해외 반부패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 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 4. 관계 법령 및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처, 공급자, 고객 또는 기타 사업상 이해관계자와 금품, 선물, 접대 등을 주고받지 않겠습니다.
- 5. 관계 법령과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소속 임직원과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업무 처리를 지시하거나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 6. 국내외 공무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직자 등에게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금품 등 어떠한 형태의 뇌물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그러한 제공 또는 수령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역시 하지 않으며,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 7. 업무수행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 8.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저작권법」등 제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허가나 법적 권리 없이 제3자의 지적 재산을 고의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9.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거나 주식의 가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 내부의 정보를 알고 있을 때 회사의 주식 매매를 하는 등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 10. 회사의 비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회사의 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 또는 타인에게 이득을 주지 않으며, 회사 내에서도 비밀 정보는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겠습니다.
- 11. 거래상대방(잠재적 고객 포함)으로 부터 관련 법령과 회사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받을 경우, 회사의 기본 방침에 따라 이를 거절하는 등 윤리적이고 적법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대응이 어려울 경우 이를 상사 및 준법지원팀(또는 경영개선팀)에 보고하고, 상사 및 준법지원팀(또는 경영개선팀)의 적법한 지침에 따라 해당 사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 12. 거래상대방(잠재적 고객 포함)이 관련 법령 또는 회사의 정책에 위반하는 행위에 관여한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반드시 회사와 상의하겠습니다.
- 13. 회사의 이익에 불일치하거나 반대되는 행동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4. 회사 업무 외의 사업 등을 위하여 근무시간이나 회사의 자산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15. 회사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6. 고객과 시장에 대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며, 시장에 대한 정보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경쟁 업체 임직원과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 17. 식사 및 여행 경비 등 사업 경비에 관한 지출은 회사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 18. 본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사내 규정 위반 행위를 알게 되거나, 그러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이는 본인이 관련 법령과 사내 규정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즉시 회사 준법지원팀(또는 경영개선팀)에 통보하겠습니다.

- 19.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사내 규정 위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회사와 상의하겠습니다.
- 20. 회사가 진행하는 반부패 관련 교육 등 준법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며,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 2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회사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본인은 회사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기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관련 법령 또는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회사의 조사 또는 감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_년 _	월 _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